

## 2020년 소방위 승진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0년 소방위 승진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5일

중앙소방학교장

### I . 시험개요

#### ○ 시험일정

원서접수	필기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7. 27. ~ 7. 30. 중앙소방학교 119고시	9. 5. 5개 권역 (시험장 별도공고)	9. 17.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 상기 시험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시행 될 수 있음(7일전 공고)

#### ○ 선발인원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선발	390	29	23	10	13	22	9	7	3	69	40	22	20	21	32	30	35	-	5
응시	2,708	280	165	90	200	162	70	179	20	536	164	139	106	90	154	142	158	-	53
경쟁률	6.9	9.7	7.2	9.0	15.4	7.4	7.8	25.6	6.7	7.8	4.1	6.3	5.3	4.3	4.8	4.7	4.5	-	10.6

※ 소방위 승진시험 선발인원은 해당 시·도 사정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으며, 선발인원 변경 시도는 공문 생산하여 통보(수신처 :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및 해당 시도 소방기관 전체) → 통보 시 효력 발생

#### ○ 응시자격

- 제1차 시험 실시일('20. 9. 5) 현재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2년)에 달할 것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의 승진임용 제한자가 아닐 것

## II. 원서접수 등

### 1. 원서접수(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

- 접수기간 : 7. 27.(월) 10:00 ~ 7. 30.(목) 18:00

※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시험응시 접수취소는 원서접수 기간내만 가능

- 접수방법 : 중앙소방학교 119고시(원서접수사이트) 접수

#### ♣ 원서접수 유의사항

- 사진등록 : 사진파일(JPG, PNG, BMP), 해상도(100dpi이상), 반명함 증명사진
- 사진제한 :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 응시수수료 : 없음
- 접수확인 : 응시자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 확인(로그인 → 마이페이지)  
※ 확인내용 : 본인 소속 시·도, 이름, 임용일자, 전화번호 등

### 2. 응시자격 조회

- 조회기간 : 7. 31.(금) ~ 8. 7.(금)

- 조회대상 : 소방위 승진시험 원서접수자

- 조회기관 : 시·도(중앙소방학교 → 소방본부)

- 조회내용 : 응시자 소속, 응시자격, 인적사항 등 적합여부

### 3. 응시번호 부여 및 응시표 교부

응시번호 부여
<b>8. 14.(금) 한</b>
❖ 시·도 별 접수번호 순에 의하여 응시번호 부여



응시표* 교부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2호 서식
<b>8. 24.(월) 이후</b>

### III. 필기시험

#### 1. 필기시험

- 시험일시 : **9. 5.(토)**

입실완료 시간	시험 시간
10:30분 까지	11:00 ~ 12:15(75분)

- 시험장소 : 5권역(천안, 서울, 부산, 대구, 광주) ※ **8. 24.(월)** 별도 공고

권역	시험권역	해당 시·도	시험운영본부
1권역	충청권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세종소방본부
2권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서울소방본부
3권역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창원	부산소방본부
4권역	경북권	대구, 경북	대구소방본부
5권역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광주소방본부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선택형 필기시험)

- 시험과목 : 행정법(25문항), 소방법령Ⅳ\*(25문항), 소방전술\*\*\*(25문항)

\* 소방공무원법, 위험물안전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 화재진압 · 구조 · 구급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지식 · 기술 및 기법 등(별첨 1)

※ 법령관련 문제는 **2020. 9. 5.(토)** 현재 시행중인 법령에서 출제

-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 소방공무원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기간만료전)

#### 2. 출제문제 문의기간 운영

- 운영기간 : **9. 5.(토) 14:00 ~ 9. 6.(일) 24:00**

- 문의방법 : 중앙소방학교 119고시(119gosi.kr)에서 신청

- 문의절차 : 로그인 → 질의응답 → 필기시험 문의 → 문의서(별첨 4) 첨부\*

\* 응시자는 소방위 승진시험 필기시험문제 문의서 작성 첨부

- 문의내용 : 출제문제 오류, 복수정답, 정답없음 등 문의

\* 시험문제 공개요구 또는 전화문의는 받지 않음

### 3. 최종합격자 공고

- 공고일시 : **9. 17.(목) 16:00**
- 공고방법 : 중앙소방학교 및 119고시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최종합격자 명단, 출제문제 문의결과 공고

<시험의 합격결정>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4조

- 합격기준 : 필기시험은 매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 최종합격자 : 필기시험 성적 60% 및 당해 계급에서의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  
명부의 총평정점 40%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위\*에 의해 결정
  -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동점자 순위결정
  - ①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이 높은 사람
  - ②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 ③ 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 ④ 소방공무원으로 장기근무한 사람

#### ♣ 불합격자 필기시험 점수 공개

- 공개기간 : **9. 17(목) 16:00 ~ 9. 18(금) 18:00**
- 공개방법 : 119고시에서 공개(접속 → 성적조회→ 본인인증 → 응시번호)

## V . 유의사항

### 1. 공통사항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시험일정 및 정보는 중앙소방학교(119고시)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이고, 응시자는 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험은 우천, 폭설,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 공지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이후 입장 불가),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 포기로 간주됩니다.
- 시험장의 물품 등을 파손하는 경우 응시자 본인이 변상하여야 하며, 시험장(학교) 내에서 절대 금연입니다.
- 시험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 사진등록 및 작성, 오기, 누락, 연락 불능, 개인정보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시험 중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소방학교에서는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응시자격 요건이 적합하지 않은 응시자의 시험결과는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 시험당일 유의사항

- 응시표에 명기된 시험장소 및 응시번호별 시험실(시험장 입구 게시예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미지참 응시자는 모든 시험절차에서 응시 불가합니다.
  - 인 정 : 소방공무원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만
  - 불인정 :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
- 필기시험 응시자는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 기기는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전화 등 통신 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휴대금지물품 예시 : 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카메라 안경,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무선호출기, 이어폰, PDA, 스마트워치, 몰래카메라, 전자계산기 등

-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사인펜)를 반드시 지참하고 필기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 중앙소방학교에서는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제공하지 않음
- 시계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가능하며,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휴대가 불가능합니다.
- 책상, 벽 등에 필기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며,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 3.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

- 필기시험 OMR 답안지를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답안지에는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가져온 연필 또는 샤프, 적색펜을 사용하거나 답란에 잘못 기재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예비마킹 등으로 인하여 답안지에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이외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필히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함.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예비마킹을 했을 시 감독관에게 답안지 교체요청 가능

- 놓도가 옅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사용으로 답안 마킹이 흐리거나,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마킹할 경우 OMR 판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제지를 받은 후에는 책형(A형·B형)을 확인하여 답안지에 표기하고, 시험이 시작되면 페이지수와 인쇄상태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문제지를 교체합니다. 교체 요청하지 않아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답안, 책형,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표기) 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지 배부 후 시험시작 전에 문제를 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종료 후(벨 또는 음악 방송 즉시) 일체 답안지를 작성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 작성한 답안지는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기시험 문제는 비공개이므로, 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회수하며, 불응 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 실내에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중앙소방학교에서 제공하지 않은 시계인 경우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방송(벨)으로 안내되는 시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지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지 표지의 과목 순서대로 채점됩니다.
-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필기시험 중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용히 손을 들어 감독관의 지시를 받습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당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운영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4. 부정행위자 조치

-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당해 소방공무원은 5년간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자의 명단을 그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임용권자는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 부정행위자가 당해 필기시험에서 작성한 모든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 합니다.
- 시험 중에 소지하고 있는 응시표의 앞면 또는 뒷면에 시험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기타사항

- 원서접수 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주민등록 초본 등 증빙서류를 중앙소방학교로 변경일 기준 5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문자안내는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문자를 수신하지 못하여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및 공고사항을 확인하지 않거나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불합격 처리되는 경우는 모두 응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니, 응시자는 반드시 공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안내사항은 【별첨 5】을 참고해주세요  
- 확진자는 시험응시 불가

<문의전화> (휴일제외, 평일 09:00 ~ 18:00)

◇ 시험문의(체력, 필기, 면접)

- 문의처 :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041-840-6620 / 내선 2)**
- 주 소 : 충남 공주시 사곡면 연수단지길 92 / 우편번호: 32522

◇ 응시표 출력, 원서접수사이트 장애 관련

- 문의처 : SE코리아 **(053-474-1212)**

- 별첨 1. 소방전술 출제범위 1부.
2. 소방공무원법 출제범위 1부.
3. 답안지 작성 및 채점기준 1부.
4. 소방위 승진 필기시험문제 문의(질의)서 1부.
5.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1부. 끝.

## 소방전술 출제범위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 별표 1)

- 행정법 : 행정법 총론 및 각론
- 소방법령Ⅳ : 소방공무원법, 위험물안전관리법(시험당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
  - ↳ 소방법령Ⅳ에 포함되는 법률은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 소방전술 : 화재진압·구조·구급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지식·기술 및 기법 등

분야	출제범위	비고
화재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의 의의 및 성상</li> <li>- 화재진압의 의의</li> <li>- 단계별 화재진압활동 및 지휘이론</li> <li>- 화재진압 전술</li> <li>- 소방용수 총론 및 시설</li> <li>-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등</li> <li>- 재난현장 표준작전 절차(화재분야)</li> <li>- 안전관리의 기본</li> <li>- 소방활동 안전관리</li> <li>- 재해의 원인, 예방 및 조사</li> <li>- 안전 교육</li> <li>- 소화약제 및 연소 폭발이론</li> <li>- 위험물성상 및 진압이론</li> <li>- 화재조사실무(관계법령 포함)</li> </ul>	
구조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개론</li> <li>- 구조활동의 전개요령</li> <li>- 군중통제, 구조장비개론, 구조장비 조작</li> <li>- 기본구조훈련(로프, 확보, 하강, 등반, 도하 등)</li> <li>- 응용구조훈련</li> <li>- 일반(전문) 구조활동(기술)</li> <li>- 재난현장 표준작전 절차(구조분야)</li> <li>- 안전관리의 기본 및 현장활동 안전관리</li> <li>-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li> <li>-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li> </ul>	
구급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의료 개론</li> <li>- 응급의학 총론</li> <li>- 응급의료 장비 운영</li> <li>- 심폐정지, 순환부전, 의식장애, 출혈, 일반외상, 두부 및 경추손상, 기도·소화관이물, 대상이상, 체온이상, 감염증, 면역부전, 급성복통, 화학손상, 산부인과질환, 신생아질환, 정신장애, 창상</li> </ul>	
소방차량 정비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차동차 일반</li> <li>- 소방차동차 점검·정비</li> <li>- 소방차동차 구조 및 원리</li> <li>- 고가·굴절 사다리차</li> </ul>	

\* 소방전술 세부범위는 시험일 기준 당해연도 발행되는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공통교재(소방전술 I · II · III)** 범위로 한다.

<별첨 2>

## '소방공무원법' 출제범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체계도

법령체계도

# 소방공무원법

상하위법	신구법	판례	현재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의견제시사례	입법추진현황
------	-----	----	-------	-------	-------	--------	--------

본문 제정·개정문 연혁 3단비교 신구조문대비표

### 상하위법

**소방공무원법** [시행 2020. 4. 1.] [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전부개정] [본문](#) [3단비교](#) [판례등](#)

**시행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20. 6. 30.] [대통령령 제30807호, 2020. 6. 30., 타법개정]

**시행규칙**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20. 4. 1.] [행정안전부령 제168호, 2020. 3. 13., 일부개정]

**시행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3. 10., 타법개정]

**시행령**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20. 6. 23.] [대통령령 제30808호, 2020. 6. 23., 타법개정]

**시행령**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3. 10., 타법개정]

**시행령**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3. 10., 타법개정]

**시행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3. 10., 타법개정]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0. 4. 1.] [행정안전부령 제168호, 2020. 3. 13., 일부개정]

**시행령** 소방공무원 징계령 [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3. 10., 타법개정]

**시행령** 소방공무원기장령 [시행 2020. 5. 4.] [대통령령 제30661호, 2020. 5. 4., 일부개정]

## 답안지 작성 및 채점기준

### □ 특점 산출기준

- 답안지는 OMR 스캐너로만 판독하므로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만 작성
- 점수산출은 OMR 스캐너 판독결과에 따름
- 채점관련 기타사항은 시험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름

### □ 인적사항 및 책형표기

- 답안지를 받으면 본인의 인적정보(성명, 응시번호, 필적감정)를 정확히 기재(표기)하고, 책형란에 본인 문제지의 책형을 “●”로 표기
- 답안지를 교체한 경우 반드시 기재(표기)사항 빠짐없이 본인이 직접 작성 (표기), 모든 기재(표기)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
- 인적사항 및 책형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무효처리 등)

### □ 답안지 표기방법 및 주의사항

-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예시>와 같이 “●”로 정확하게 표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득점 불 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이 감수
- <예시> 올바른 표기 : ● 잘못된 표기 : ○ ✗ ○ ○ ○ ○ ○ ○ ② ③
-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사용으로 답안 마킹이 흐리거나,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작게 점만 찍어 마킹한 경우 OMR 판독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적색(청색)볼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마킹을 할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 될 수 있음
  - 불량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사용, 답안란 마킹 잘못, 답안지 여백 낙서 등으로 채점불가 시 일체 정정이 불가하며 응시자 본인 책임
  - 답안지는 훼손, 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 마크를 훼손해서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 □ 수정테이프 등 사용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할 경우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지 않고 답안지 교체
- 수정테이프, 수정액 등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책임

<별첨 4>

## 소방위 승진 필기시험문제 문의(질의)서

성 명	(응시번호)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휴대전화 :</li><li>• 이 메 일 :</li></ul>
응시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020년도 소방위 승진시험</li></ul>
질의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해당과목 :</li><li>• 문항번호 : A형 - 00번, B형 - 00번</li></ul>

<출제문제>

<사유 및 관련근거> - 질의사유 및 관련근거 반드시 기재

<응시자 의견>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 ▼ 수험생은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 ※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마스크 분실 및 사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마스크 여분 소지 권장
-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방역담당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시험실 안팎에서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시험시간 외에도 다른 수험생과 1.5m 이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수험생은 수시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 ▼ 수험생 개인이 사용한 휴지, 마스크 등은 시험장에 버리지 말고,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 시험시작 후 시험감독관이 실시하는 본인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본인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 ▼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클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필기시험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통제합니다.
- ※ 확진환자는 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3항에 의거 격리대상자 등은 시험장에서의 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

↳ 자가격리자(최근 14일 이전 해외입국자 포함) → 별도장소 응시 → 응시자에게 별도 통보  
자택 또는 별도시험장